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

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한처분 범위 및 기간축소 개정 시행

1. 고용노동부 공문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한 관련 개정지침 시달 (외국인력담당관 제2264호('23.6.28))과 관련입니다.

2. 최근 고용노동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「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('23.2.21)」 후속조치로 ‘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범위 및 기간’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.

- 다 음 -

< 건설업 고용제한처분 완화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개정 사항 >

◇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

-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: (현행) 동일법인 전체 현장 → (개정) 당해 현장
-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: (현행)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→ (개정) 1년

※ 시행일 : '23.6.30

3. 이에, 관련자료를 송부드리니 외국인 고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 담당자 연락처 〉

- 담당자 :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유승식 부장
- 전 화 : 02-3485-8302, 010-5047-7934

붙 임 : 1. 고용노동부 공문 1부.

2. 고용노동부 붙임자료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 개정) 1부. 끝

